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이용안내



Contents

01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안내

설립이념/비전/비전/연혁

02 순애노인전문요양원 현황

현황 / 직원 배치 인력 /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 시설현황 및 설비

03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입소절차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04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05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윤리강령

어르신 생활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06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07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자원봉사신청방법/자원봉사활동영역/후원안내/후원계좌/후원방법/찾아오시는길

이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안내

설립이념

본 시설은 만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및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없어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시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질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어르신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 모시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션

어르신이 행복한, 가족이 편안한, 직원들이 신나는 행복한 요양원

비전

- 자율적인 생활지원 : 어르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지원
- 전문적 케어시스템 : 입소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 케어플랜 작성, 지원
-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입소자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심
-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 유지향상
- 지역사회와 교류촉진 : 지역사회와 일원으로 지역과의 교류를 도모

연혁

- 1991. 11. 5 실비요양원 “순애원” 준공 및 개원
- 1998. 12. 15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준공
- 1999. 8. 1 순애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2002. 1. 29 실비요양원 “순애원”을 “순애시니어타운”으로 개칭
- 2003. 1. 1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및 호스피스 요양동 개원
- 2008. 7. 1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 2015. 6. 1 순애노인전문요양원·순애시니어타운 통합 (정원 114명)
-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A등급)
- 2021년~2022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A등급)

02 순애노인전문요양원 현황

현황

시 설 명 :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시 설 장 : 마 민 주

개 원 일 : 1991.11.05

입소정원:114명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78번길 73

건물면적:5,413.55㎡

전화번호 : 031-962-8360

팩스번호 : 031-963-4329

홈페이지 : www.soonaeuwon.com

이메일 주소 : soonaeuwon@hanmail.net

장기요양기관기호 : 11129000020 장기요양 서비스(시설급여)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준명복지재단

법인대표 : 오 연 상

종사자근무체계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인원	1	1	2	4	1
구분	요양보호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촉탁의사
인원	34	1	1	1	2 (내과1,정신과1)

- * 급식 위탁 : (주)삼성웰스토리
- * 세탁 위탁 : 다듬돌세탁방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구분	시설장 /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 사무원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인원	- 주5일 근무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	- 주5일 근무 D근무 : 09:00~18:00 E 근무 : 11:30 ~21:00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		- 주5일 근무 (09:00~18:00)
구분	요양보호사	관리인	위생원	촉탁의사
인원	- 2교대 근무 D근무 : 07:30~17:30 N근무 : 17:30~07:30	- 주5일 근무 (08:30~18:00) -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	- 주5일 근무 (09:00~18:00)	2주 1회

시설현황 및 설비

* 시설규모 : 대지 16,538 m²

연면적 5,413.55m²

* 시설구조 : 철근콘트리트 구조

구 분		규 모	주 요 시 설 용 도
계		5,413,.55m ²	
B동	3층	1,032.15m ²	요양실(301호~309호), 간호사실, 목욕실, 세탁실, 식당, 직원휴게실
	2층	1,094.59m ²	요양실(201호~206호),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시설장실, 교육실 및 자원봉사자실, 직원휴게실
	1층	1,049.80m ²	요양실(101호~106호),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이미용실, 면회실, 화장실, 창고
	지하1층	677.72m ²	주방, 직원식당, 영양사실, 직원휴게실, 창고, 기계실
E동	3층	298.05m ²	요양실(301호~305호), 목욕실, 간호사실
	2층	449.65m ²	요양실(201호~211호), 직원실
	1층	464.45m ²	물리(작업)치료실, 휴게실, 목욕실, 세탁실, 직원휴게실, 기계실
F동	3층	78.00m ²	다목적실
	2층	210.39m ²	요양실(F1호~F3호)
	1층	58.75m ²	예배실, 주차장



03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입소절차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1. 입소정원

- ① 입소정원은 114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의 등급판정 후 수급자의 요청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입소의뢰에 의한 지자체의 안내
- ③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관련매체를 통한 수급자의 선택
- ④ 보호자 및 직원들의 소개

3. 입소자격

- ①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2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하며, 또는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어르신

4. 입소절차

- ① 기초생활수급권(의료급여)어르신
 - ㉠ 해당 관할 동사무소 및 구청에 신청(장기요양인정서,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 관할 구청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및 통보
 - ㉢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 ② 일반 어르신
 - ㉠ 입소를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입소 계약(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비급여항목, 입소계약조건 검토
 - ㉡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5.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신청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전염병(감염)의사소견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①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및 기타변동에 따라 재계약(변경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① 입소비용 : 등급별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법(매년 고시금액)에 의한다.

(요양보호사 2.1:1 기준)

구분	산출내역	비고
기초수급권자	1일 해당수가 X 해당일수 X 00%(본인부담율 면제)	2025년 수가 1등급 : 90,450원 2등급 : 83,910원 3등급 : 79,240원
일반어르신	1일 해당수가 X 해당일수 X 20%(본인부담율)	
차상위,의료수급권자	1일 해당수가 X 해당일수 X 8%,12%(본인부담율)	

② 비급여항목

항목	산출내역	비고
식재료비 (간식포함)	1식 X 3,500원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가능

4. 계약변경

- ①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명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 계약 한다.

5. 계약해제

입소 후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등급 갱신결과,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② 입소비용 및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2개월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 ③ 지병이 심각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 (최대 15일 이상)
- ④ 시설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입소자와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 ⑤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입소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힌 경우
- ⑥ 기타 입소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입소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 ㉤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 및 기타비용을 변경할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비급여항목 (식재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급여항목 수납금액 변경 및 유료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인한 비급여 수납항목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를 통해 변경한다.)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실시중에 '시설(종사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계약자)'에게 배상한다. 단 시설내의 자산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시설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입소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② 입호자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천지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④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⑤ 입소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묻지 아니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의료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원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으로는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띠사용과 침대의 안전띠사용, 경관튜브 제거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체구속 등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어르신이 신체 가학이나 낙상등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타 어르신이나 직원들에게 신체적 위험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보호를 실시한다.
- ④ 특별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특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에 특별실에 배정하여 집중적인 간호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때 발생하는 특별실 이용 상급침실료 비용과 특별의료 소모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 제공 서비스

-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전문적 케어서비스
- ② 상 담 서 비 스 : 어르신상담, 가족상담, 입퇴소 상담, 내방상담 등
- ③ 영 양 관 리 서 비 스 : 균형잡힌 식단관리, 질환별 맞춤식, 가정적인 식사 제공, 절기식 서비스 등
- ④ 의 료 지 원 서 비 스 : 활력증후, 토약 및 드레싱,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축탁의 진료 및 처방관리, 혈당관리, 건강상담 등
- ⑤ 재 활 서 비 스 : 물리(작업)치료, 운동치료, ROM운동, 연하재활훈련 등
- ⑥ 사 회 재 활 서 비 스 : 현실감각훈련, 옥서요법, 치료레크레이션, 놀이요법, 웃음치료, 행복농장 등
- ⑦ 여가정서지원서비스 : 방송반, 노래교실, 10시뉴스, 실버체조, 시네마여행, 가요찾집, 나들이, 종교활동, 산책 및 일광욕 등

2. 비급여 제공 서비스

- ① 식사제공 서비스
- ② 각종 치료프로그램(전문강사진행)등
- ③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일상 생활에서의 의료서비스

- ①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혈압, 체온, 혈당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 ② 건강상태별 복용약물을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 ③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촉탁의 진료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행 등)을 취한다.
- ③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촉탁의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입소료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위험상황 발생 시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사용상의 문제

- ①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관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③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단, 입소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 ④ 안전관리상 개인 사물함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서랍장은 1인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규칙상의 문제

- ① 외출,외박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1일전 연락을 취한다.
- ② 식사를 준비해 오는 경우에는 하루 전에 연락을 취하여 식사여부를 알리며 기관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취소하도록 한다.
- ③ 외출,외박 시 입소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 및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면회는 정해진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나, 외상 입소자는 요양실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 ⑤ 식사시간의 면회는 되도록 피한다. 면회시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안전상의 문제

- ① 금주, 금연을 실시한다.
- ② 의사 및 간호사의 허락없이 약물을 금한다.
- ③ 직원, 자원봉사자 타 어르신에게 금품이나 현물을 주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④ 폭력, 폭언 등으로 타 어르신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퇴소조치한다.
- ⑤ 건강상태에 따라 외출,외박은 금한다.
(단, 거동이 가능한 입소자는 기관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 외출 외박 할 수 있다.)

04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

-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2. 운영세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의 시설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① 기능

-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
- ㉤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 ㉦ 규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기타 위원회에서 각 기관운영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
-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구성

- ㉠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의

- ㉠ 정기회의 (분기별)
-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 재적위원 3분의 1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05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윤리강령

어르신 생활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편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권이란?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누릴 권리.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 활동 및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 폭행, 협박, 신체구속, 감금, 출입통제, 치료나 요양의 목적 외 노동행위,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복용 및 주사 등

정서적 학대

- 무시, 무반응, 비방, 모욕, 창피, 비웃음, 욕설, 고함(큰소리로 호통), 반말,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등

성적 학대

- 목욕서비스 중 수치심 유발 행위, 기버귀 교체, 옷 교체시 자아 존중감에 상처를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소지 금품 갈취, 기초수급금 및 노령연금 무단 사용

방임/자기방임

- 욕창, 염증, 악취 등의 방치, 잔존능력 향상 외면, 케어소홀로 인한 골절

유기

- 입소 후 보호자가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치매 노인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노인학대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06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1. 건강보험공단 주최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A등급)



2. 감염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 ① 공동 생활공간 및 중환자실 공기살균기 설치
- ② 코로나 바이러스 및 각종바이러스 99% 살균
- ③ 시설방역 및 종사자 개인방역 철저
- ④ 전문방역 업체를 통한 살균, 살서, 살충 실시

3. 소통하는 우리 '행복프로젝트'

'우리 이제 한가족 이에요' 입소 60일동안의 생활모습 공유 프로젝트
;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리스크 최소화, 안심모니터링

소통하는 우리 '보호자를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저희 가족이 되신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3일간 간호사가 어르신 건강상담 및 일상생활 전화 드리기	주 1회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일상생활 사진 또는 안부 문자 및 전화 드리기	입소하신 첫달 손편지 보내기

집에서 걱정하실 보호자를 위해 입소하신 첫 달에 사회복지사들의 정성이 들어간 손편지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3. 낙상제로 운동

① 낙상,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 낙상예방 구호 매일 함께 외치기, 낙상없는 날 카운트, 저상침대 사용, 낙상보조운동기, 낙상예방교육, 인권교육 강화 등

② 신체억제 지양 서비스 체계 강화 (신체억제 ZERO! 안전사고 無!)

어르신과 직원이 매일 함께 외치는 낙상ZERO

1.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은 정지시 **잠금장치를 잠근다!**
2. 보행 어르신은 **아저바를 잡는다!**
3. 침상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비상벨 누른다!**



4. 좋은돌봄 문화 만들기 캠페인

『좋은 돌봄서비스』를 위한 우리들의 다짐

1. 어르신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보호해 드리고 관심을 표현한다.
2. 어르신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드린다.
3. 어르신을 항상 편안하고 느긋하게 대하고, 천천히 보조를 맞추며 서비스 한다.
4. 어르신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어르신이 처한 환경을 최대한 인정하고 대한다.
5. 어르신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하여 어르신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한다.
6. 어르신의 말씀과 욕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받아들인다.
7. 어르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8. 어르신을 가치있고 독특한 개성적인 사람으로 인식한다.
9. 어르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숨겨진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10. 어르신의 독특한 성격과 본성을 지지하고 인정해 드린다.
11. 어르신의 장점과 기능을 잘 파악하여 인정해 드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어르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어르신께 적절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어르신이 자기 생각이나 요구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14. 어르신과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자 노력한다.
15. 어르신의 행동이나 이동을 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동을 보조한다.
16. 어르신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로 대한다.
17. 어르신이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적절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18. 어르신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19. 어르신께 재미를 제공하고 유머를 주고받는다.

사회복지법인 준명복지재단
순애노인전문요양원 파인힐리전문요양원

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호칭, 말투, 태도 등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존칭어 사용하기

② 'CQC 좋은돌봄 질 측정을 위한 도구' 게시 및

매일 함께 읽기



07 자원봉사 활동 및 후원 활동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일반봉사 환경미화(시설 내/외 청소, 유리창닦기), 진행보조, 식사수발, 산책보조, 나들이 동행,
말벗서비스, 대독서비스, 행정보조 등

전문봉사 목욕보조, 아미용서비스, 발마사지, 재활서비스, 종교활동지원, 특별공연 지원 등

신청방법

내방접수 또는 전화상담 031)962-8360 / VMS자원봉사인증홈페이지 가입

자원봉사활동 시간

주중, 주말 오전 9시~18시 가능(사전 전화요망)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하시기를 권장하며, 가입 시 1365(자원봉사포털)연동에 체크하시면 확인서 발급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반드시 봉사실적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잊지말고 등록 및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모집 안내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251-01-0019-819 (북)준명복지재단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

보험증권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Omissions Insurance

계약번호 : 82503832717000

계약자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 (1047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곡로 *****	계약자번호	304-82-74899
피보험자	순애노인전문요양원	피보험자번호	128-82-10802
보험기간	2025.04.01 00:01 - 2026.04.01 00:01	계약일	2025.03.28
첫회보험료	10,115,800 원 (1회/일시납)	총보험료	10,115,800 원

가입내역

목적물	목적물명	전문인배상		
	소재지	(10265)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78번길 73 E동 F동 (관산동)		
	목적물명	전문인배상	인원수	76
	회계종류코드	KRW	소급당보일차	2025-04-01
	담보지역코드	대한민국	지판관합법원명	대한민국

보장조건	화제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ProfessionalIndemnityErrNOmission (ProfessionalIndemnity 민담 보상한도)	KRW	100,000,000	10,115,800
ProfessionalIndemnityErrNOmission (ProfessionalIndemnity 사고 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	
ProfessionalIndemnityErrNOmission (ProfessionalIndemnity 총보 상한도)	KRW	100,000,000	
ProfessionalIndemnityErrNOmission (사고당 공제금액)	KRW	1,000,000	
보험료합계			10,115,800

사용된약관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Omissions Insurance

-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 Damage to Property Under Ongoing Professional Work Exclusion Clause
- Asbestos Exclusion Clause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Clause (LMA 5399)

우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5년03월31일 재무기술보험3팀 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사 장李文華

삼성화재

사단법인
한국재보험협회
이사장
홍길동
2014년 1월 17일

삼성화재 재무기술보험3팀, 보험대리점 씨인스웬보험컨설팅(주) (이정숙)

Tel : - [합회등록번호 : 20170566110006]

mail :

발행일: 2025-03-31 09:37:25

[페이지 1/6]

20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2

보험증권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1)

계약번호 : 82503855222000

계약자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 (1047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계약자번호	304-82-74899
피보험자	순예노안전문요양원	피보험자번호	128-82-10802
보험기간	2025.04.01 00:01 ~ 2026.04.01 00:01	청약일	2025.03.28
초회보험료	1,753,200 원 (1회 /일세납)	총보험료	1,753,200 원

가입내역

목적물	목적물명	일반시설		
	소재지	(10265)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78번길 73 E동 F동 (관산동)		
	시설소유입종코드	노년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노년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보험료기초종류	수용인원
	보험료기준값	114	담보지역구분코드	대한민국
	저관관할법원명	대한민국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시설소유 대인 (연당 보상한도)	KRW	200,000,000	1,753,200
시설소유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0	
시설소유 대인 (총보상한도)	KRW	0	
시설소유 대인 (사고당 자기부담금)	KRW	500,000	0
시설소유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KRW	10,000,000	
시설소유 대물 (총보상한도)	KRW	0	
시설소유 대물 (사고당 자기부담금)	KRW	500,000	
보험료합계			1,753,200

사용된약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1)
-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Hazard Exclusion Clause -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Exclusion Clause -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5년03월31일 재물기술보험3월 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사 장李文華



삼성화재



삼성화재 재물기술보험3월, 보험대리점 씨인스원보험컨설팅(주) (이정숙)

Tel : + [할화등록번호 : 20170566110006]

mail :

화재보험 가입증서

보험증권
화재보험

계약번호 : 82405492391000

계약자	순애노인전문요양원	계약자번호	128-82-10802
	412-47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		
피보험자	순애노인전문요양원	피보험자번호	128-82-10802
보험기간	2024.07.26 16:00 ~ 2025.07.26 16:00	청약일	2024.07.09
첫회보험료	1,200,400 원 (1회 /일시납)	총보험료	1,200,400 원

소재지

10265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78번길 73 (관산동)

가입내역 [총가입금액 : 8,079,901,000 원]

가입대상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비고
건물	화재	KRW	4,386,500,000	644,800	가입업종코드: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건물구조등급코드:1급 보험가입면적(㎡):3,854 지상층수(건물전체층수):3 화재요율적용업종코드: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지하층수:1 특수건물여부:아니오
건물수용_시설	화재	KRW	500,000,000	73,500	목적물명:건물수용_시설
건물수용_집기비품	화재	KRW	400,000,000	58,800	목적물명:건물수용_집기비품
전기기기및시설	화재	KRW	50,000,000	7,300	목적물명:전기기기및시설
	전기위험	KRW	50,000,000	12,800	
건물	화재	KRW	1,843,401,000	270,900	가입업종코드: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건물구조등급코드:1급 보험가입면적(㎡):1,559 지상층수(건물전체층수):3 화재요율적용업종코드: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특수건물여부:아니오
건물수용_시설	화재	KRW	500,000,000	73,500	목적물명:건물수용_시설
건물수용_집기비품	화재	KRW	400,000,000	58,800	목적물명:건물수용_집기비품
보험료합계					1,200,400 원

우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4년07월16일 일산지점 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 장 李文華

삼성화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한민국정부
민지세 100원
서초사무서장
후 날 승 인
2016년 34017호

삼성화재 일산지점, 김형욱
Tel : 010-5233-5914/010-5233-5914 [협회등록번호 : 19950364040093]
E-mail : kho2381@samsungfire.com

발행일 : 2024-07-16 [페이지 1 / 3]